'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

의안 번호	330

제출년월일 : '98. 6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○ '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제147회('98. 5. 2)임시회의에서 변경 확정한 바 있으나,

○ 도유재산(도로)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[재산의 처분]

- 단양온달국민관광지편입 도로부지(지방도) 양여 -

○위 치 : 단양군 영춘면 하리 141-1외 9필지

○규 모 : 6,985㎡ (2,113평)

○시 기 : '98 상반기

○처분가액 : 11,725천원

3. 제안근거

○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

○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

4. '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서(안) 『별첨』

5. 관계법령 발췌 : 『별첨』

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서

199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(7-1)

[회계명 : 일반회계] (단위 : ㎡, 천원)

구분			당초			변경(추가)			합계		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토지	2	5,950.9	3,775,310				2	5,950.9	3,775,310
		건물	1	1,281	1,028,184				1	1,281	1,028,184
		기타									
	매입	토지	2	5,950.9	3,775,310				2	5,950.9	3,775,310
		건물	1	1,281	1,028,184				1	1,281	1,028,184
		기타									
	교환취득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기타취득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처분	계	토지	1	3,305.9	2,975,310	1	6,985	11,725	2	10,290.9	2,987,035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매각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양여	토지	1	3,305.9	2,975,310	1	6,985	11,725	2	10,290.9	2,987,035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교환처분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사용 및 대부허가	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
1998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(7-5)

[회계명 : 일반회계] 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번호	재산표시			양여대상수량	장표또는평가액	양여시기	양여사유 및 근거법령	양수자	비고
	지목	소재지	일단의수량						
1	도로	단양군 영춘면 하리 141-1	6,561	6,561	10,898	98. 6	-지방도519호선내 남천교 개수공사로 발생한 폐도부지가 단양군에서 조성중인 온달국민관광지에 편입됨에 따라 -폐도부지를 단양군으로 양여하는 조건으로 신규설치된 접속도로부지 9필지 5,440㎡를 단양군에서 보상비 82,584천원을 부담 매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바, -폐도부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10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하여 단양군에 양여코자 함	단양군수	
2	도로	〃 155-1	8	8	12				
3	전	〃 147-8	6	6	32				
4	〃	〃 164-4	77	77	147				
5	〃	〃 164-5	7	7	13				
6	〃	〃 165-4	86	86	164				
7	답	〃 166-8	81	81	155				
8	〃	〃 166-9	6	6	11				
9	〃	〃 166-10	82	82	157				
10	〃	〃 168-4	71	71	136				
계	토지		6,985	6,985	11,725				
	건물								
	기타								